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용주 의원 발의】



2019. 9.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6호로 2019년 9월 19일 이용주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 나. 폐소화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면제(안 별표 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9. 11. ~ 9. 1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9조의2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별표 3에서는 폐소화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2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

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